

공정위, 『국정과제의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보고

- 내부거래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키로 -

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월 27일(토)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국정과제의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주요 보고 내용을 보면, 기업의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의 해소를 위해 지난 '98년 2월 24일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금년 4월부터 신규채무보증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의 채무보증은 2000년 3월말까지 해소토록 하였으며, 지난 '98년 3월 19일에는 금융기관장회의를 개최하여 과다·중복보증을 해소토록 하여 10조원의 채무보증을 축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채무보증에 많은 회사의 부당한 내부거래행위를 집중 조사하여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채무보증의 조기해소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한 부실기업의 퇴출을 저해하고 재벌 계열회사와 독립경영회사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내부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98년 6월 내부거래규모가 큰 5개 기업집단의 18개 계열회사에 대해 부당한 자금·자산 지원행위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내부거래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7월부터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채무보증에 많은 업체, 친인척 경영업체나 계열금융사 등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2차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기업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 외국인에게만 허용되던 지주회사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되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립요건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100% 제한, 자회사 최소지분율 50%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물가안정을 통한 제도약 기반의 발판을 마

련하기 위해 「민·관합동물가감시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2개의 「물가신고전용전화 1357번」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가격담합 이상과 부당한 출고조절을 한 44개 업체에 대하여 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생산품과 물가에 영향이 큰 원자재 및 중간재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별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55개 카르텔의 정비를 위해 가격담합이나 입찰담합 등의 경성카르텔은 금년중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제정하여 폐지하고, 모법의 근거 없이 시행령 등 하위법규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는 카르텔은 시행령의 개정이나 규제개혁을 통하여 폐지하는 반면, 보호의 필요성이 있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되고 있는 자조적인 농·수·축협 등의 공동생산·판매카르텔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으로 있다고 보고했다.

이밖에도 소비자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상품정보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광고실증제, 임시중지명령제, 중요정보제공의무 등과 같은 선진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금년 중에 제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중소 하도급업체에 대한 자금난을 완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금지급수단의 마련을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일정비율의 현금지급과 원사업자의 부도시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지난 6월에 마련하고 1,000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과거 범위반실적을 감안하여 76개 원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7월부터 직권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고 보고했다.